| 의안번호 | 제 호 |
|---|---|
| 의결 연월일 | 2017. . .<br>(제 회) |

의결사항

#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| 제 출 자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행정안전부장관) |
|---|---|
| 제출 연월일 | 2017. . .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지역 변경으로 인하여, 시행령 별표1에 규정하는 공여구역 주변지역을 현행화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“공여구역주변지역”에 5개 읍·면 추가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　　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　　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　　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　　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#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구분 | 기초지방자치단체(46개) | 행정구역(165개) |
|---|---|---|

별표 1 합계의 행정구역(165개)란 중 “(18개)·면(53개)·동(89동)”을 “(19개)·면(57개)·동(89동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경상북도 (37개) 중 “(37개)”를 “(42개)”로, 경상북도 (37개)의 김천시(1읍·3면) 중 “(1읍·3면)”을 “(1읍·4면)”으로 하고, 같은 김천시(1읍·3면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| 김천시(1읍·4면) | 아포읍, 개령면, 감문면, 남면, 농소면 |
|---|---|

별표 1 경상북도 (37개)의 성주군(1면) 중 “(1면)”을 “(1읍·4면)”으로 하고, 같은 성주군(1면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| 성주군(1읍·4면) | 선남면, 초전면, 성주읍, 벽진면, 월항면 |
|---|---|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<table>
<tr><th>현 행</th><th>개 정 안</th></tr>
<tr><td>[별표 1]<br>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(제2조제1항 관련)<br>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기초지방자치단체<br>(46개)</th><th>행정구역<br>(160개)</th></tr><tr><td>합계</td><td>시(25개)・군(12개)・구(9개)</td><td>읍(18개)・면(53개)・동(89동)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경상북도<br>(37개)</td><td>김천시(1읍・3면)</td><td>아포읍, 개령면, 감문면, 남면</td></tr><tr><td>성주군(1면)</td><td>선남면</td></tr></table></td><td>[별표 1]<br>공여구역주변지역의 범위(제2조제1항 관련)<br>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기초지방자치단체<br>(46개)</th><th>행정구역<br>(165개)</th></tr><tr><td>합계</td><td>시(25개)・군(12개)・구(9개)</td><td>읍(19개)・면(57개)・동(89동)</td></tr><tr><td rowspan="2">경상북도<br>(42개)</td><td>김천시(1읍・4면)</td><td>아포읍, 개령면, 감문면, 남면, 농소면</td></tr><tr><td>성주군(1읍・4면)</td><td>선남면, 초전면, 성주읍, 벽진면, 월항면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」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| 지역발전과 | |
|---|---|
| 연 락 처 | 02-2100-4228 |